

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. 3. 16 선고 2022가단5798 판결 [사해행위취소등]

전 문

원 고 A 유한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래, 담당변호사 박은태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주은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3. 1. 19.

판 결 선 고 2023. 3. 16.

주 문

1.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의 각 2/13 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C(D생) 사이에 2022. 6. 1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C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. 9. 20. 접수 제5900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
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 사실

가.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법원 2022차전108941호로 양수금청구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, 이 법원은 2022. 5. 12. “채무자(C)는 채권자(원고)에게 5,276,69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.”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, 위 지급명령은 2022. 6. 1. 확정되었다.

나. C의 부(父) E은 2022. 6. 1. 사망하였다. E의 상속인은 배우자인 F과 자식인 C 및 피고를 포함한 6인이며, 피고와 C의 상속분은 각 2/13이다(피고는 C의 동생이다).

다.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별지 기재 각 부동산(부산 해운대구 G 소재 토지와 주택, 이하 합하여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2022. 9. 20. 피고 앞으로 2022. 6. 1.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(이하 ‘이 사건 분할협의’이라 한다)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라.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에게는 위 부동산에 관한 법정상속분 2/13 지분(이하 ‘이 사건 지분’이라 한다)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(가지번호 포함)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,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,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

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(대법원 2007. 7. 26. 선고 2007다29119 판결).

나. 원고에게 양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C이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 이 사건 분할협의를 취소되어야 하고,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노행남

별지